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0 년 08 월 10 일 최초 이사회결의의 신주발행에 관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2020 년 09 월 01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4,3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
4. 신주의 발행가액
 -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 기준주가: $\text{Min}\{(\text{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text{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 기준주가: $\text{Min}\{(\text{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2,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을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을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0년 09월 22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2020년 09월 23일 ~ 09월 28일
7.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439238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 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의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 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 (2) 초과청약: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포함, 이하 본항에서 같다)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 (3) 일반공모 청약

가.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

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 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2020년 10월 29일 ~ 2020년 10월 30일(2일간)
 -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2020년 11월 03일 ~ 2020년 11월 04일(2일간)
10. 주금납입일: 2020년 11월 06일
11. 주금납입처: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3. 신주 상장예정일: 2020년 11월 18일
14.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주)
15. 청약사무 취급처
 -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양증권(주)의 본·지점
 -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한양증권(주)의 본·지점
 - (3) 일반공모 청약자: 한양증권(주) 본·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0일 (5영업일)
 -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한양증권(주)
17. 기타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3)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